

의안번호	2211567
의 퇴 인	박지혜의원
회 답 일	2025.8.14.
추계번호	25D38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9조의4 (법률안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자 료 등의 제출)	의원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을 평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기후영향평가서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기후영향평가서를 의장과 기후영향평가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제2항) 위원회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을 평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후영향평가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제3항) 정부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평가서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자료를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함(제4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자료의 작성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79조의4(법률안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자료 등의 제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발의자에 따라 정부나 국회입법조사처가 그 법률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을 평가한 기후영향평가서¹⁾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정안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와 정부가 기후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신규업무의 수행을 위한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재정 소요 발생 가능
- 다만, 법률안 중 기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이 되는 법률안의 범위 및 개수, 기후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분석방법론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개정안은 기후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자료의 작성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기후영향평가서의 작성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조직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의원 및 위원회의 법률안 접수 건수는 제19대 국회 17,822건, 제20대 국회 24,141건, 제21대 국회 25,858건, 제22대 국회 11,654건(2025.8.4.기준)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Ⅲ.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1) 정부가 발의하는 경우, 기후영향평가서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